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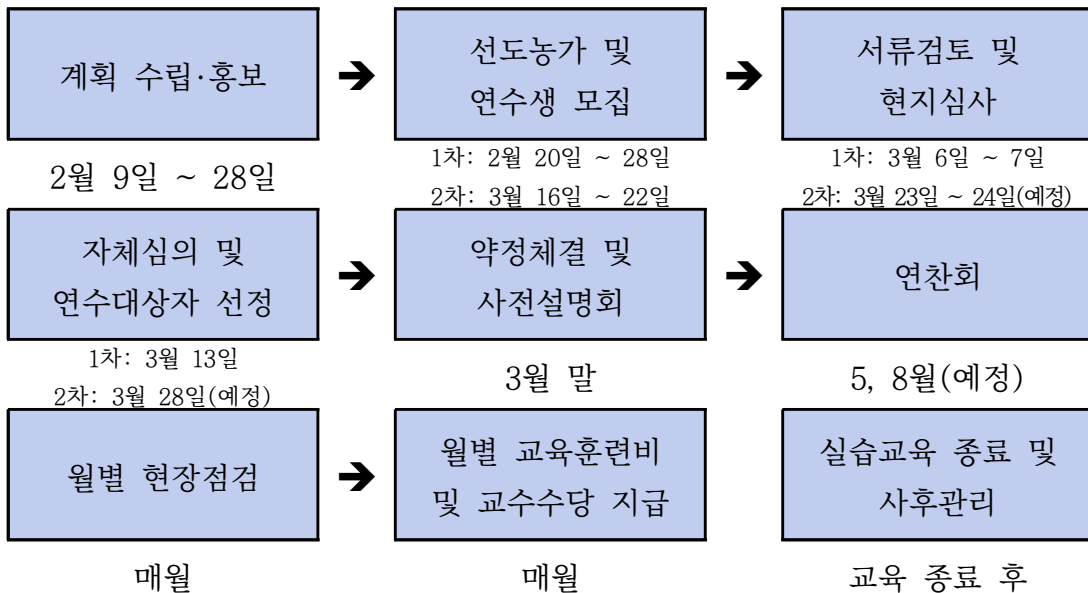
신규농업인 영농기술 향상지원을 위한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선도농가 추가모집 계획

1 운영개요

- 사업기간: 2023년 3월 ~ 11월
- 사업량: 3팀 6명(선도농가 3명, 연수생 3명) * 연수생만 교육수료처리
→ 현재 선도농가 2명, 연수생 3명 선정
→ **선도농가 1명 추가모집 * 연수가능작목: 감귤류(노지, 만감류), 레몬**
- 사업비: 18,000천원(국비 50%, 도비 50%)
 - 1,200천원/월(160시간 기준) × 3팀 × 5개월 = 18,000천원
 - 월별 연수시간에 비례하여 지급금액 별도 산정·지급
 - ※ 전체 기간 및 월별 연수시간은 연수생과 선도농가 간 사전 협의를 통하여 조절
- 사업내용: 선도농가(멘토)-연수생(멘티) 간 일대일 매칭을 통하여 연수생 수요작목 현장실습

2 세부일정 *



* 실습상황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교육신청

- 신청대상: 선도농가 1명 * 연수가능작목: 감귤류(노지, 만감류), 레몬
- 신청기간: 2023. 3. 16.(목) ~ 3. 22.(수)
- 신청방법: 직접 방문(제주농업기술센터 농촌자원팀)
- 자격조건 및 제출서류(선도농가)

<p>자격 조건</p>	<p>○ 농업기술원장(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추천한 관내 신지식농업인, 전문농 및 창업농업경영인, ICT(정보통신기술) 활용 농가·우수농업법인, 농식품부 지정 현장실습교육장(WPL), 농업명인, 농업마이스터 등으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농업경영체</p> <p>1) 지역에서 신망이 있고, 교육자적 소양을 갖춘 농업경영체(농촌진흥사업 시범교육장 운영 또는 농촌진흥기관의 교육수료자를 선정시 우대 할 수 있음)</p> <p>2) 5년 이상의 영농경력과 전문적 기술을 갖춘 농업경영체(초보단계의 연수인 경우 3년 이상된 정착 귀농인도 가능)</p> <p>※ 해당 시군에 연수 관심분야의 선도농가가 없거나 연수희망자가 타지역의 맞춤형 연수를 원할 경우, 연수를 받고자 하는 지역의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추천(확인)한 선도농가 실습장에서도 연수 가능</p>
<p>제출 서류</p>	<p>①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장 지정신청서(붙임 2 서식)</p> <p>②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장 운영계획서(붙임 3 서식)</p> <p>※ 운영계획서: 연수시행자의 주작목 및 기술현황, 실습사항, 교육의 주요내용 및 목표, 목표의 기대 효과를 포함하여 작성</p> <p>※ 약정 이후 e-HRD 시스템에 선도농가 학습지원계획서(붙임 4) 입력</p> <p>③ 보안서약서(붙임 6 서식) 및 개인정보 이용동의서(붙임 7 서식)</p>

4

운영계획

【대상자선정 및 약정체결】

- 연수대상자 선정은 연수시행자(선도농가)와의 약정체결(붙임 12 서식)을 통해 최종 선정
- 공모를 통해 접수된 선도농가 후보자를 대상으로 하여, 선정기준에 의해 연수시행자를 최종 선정

- 선정된 선도농가와 연수생간 약정을 체결하여 사업 추진
- 연수생과 선도농가의 관계가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인 경우에는 약정 불가
- 약정체결은 3~7개월을 원칙으로 하되, 연수생 및 선도농가 동의하에 연수 희망시 사업담당기관은 예산을 고려하여 연장하여 약정 가능
- 연수생과 선도농가는 현장실습교육 동안 각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연수생 또는 선도농가가 불성실하거나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농업기술센터에 연수생 또는 선도농가 지정 취소를 요청할 수 있음

< 약정의 무효·해지·변경 등 >

- ★ 중대한 허위사실로 약정 체결 시 약정은 무효가 되며 기 지원금액 전체 회수
- ★ 당초 약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또는 연수생에 대한 약정금액 미지급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약정을 해지·변경하고 필요시 추가 약정 체결 추진

- 연수생 및 선도농가는 당초 약정에도 불구하고 합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재약정이 가능하며, 이 때 사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연수생과 선도농가 간 다시 약정체결 가능
- (필수) 연수생 희망 작목별 선도농가 협력 현장실습
 - ※ 단순노동(작업)보다는 학습지원, 기술이전, 창업역량 강화에 역점 추진
- (선택) 오리엔테이션, 간담회, 평가회, 자율학습조직, 자가영농실습 등
- 현장실습교육 기간의 탄력적 운영: 3~7개월, 월 160시간
 - ※ 자가영농 실습인정(일 4시간, 월 80시간 이내): 사업담당 및 선도농가 협의
 - ※ 자가영농의 경우에도 선도농가 실습도 병행되어야 함 ex. 자가영농(4시간) + 선도농가포장(4시간)
- 주작목 + 부작목 연수가능, 선도농가 및 연수생 복수지원 가능
- 1명의 선도농가에 2명의 연수생이 현장실습 가능(3명 이상 연수 불가)
- 1명의 연수생이 2명의 선도농가에서 순차적 실습가능(연수기간 중복불가)
- 현장실습보고서(붙임 5)를 월 1회 e-HRD 시스템에 등록
 - ※ 연수생 또는 선도농가가 IT 취약계층일 경우 수기로 작성 및 관리

【교육훈련비 및 교수수당 지급】

- 연수생에게는 매월 10일 이상 연수자에 한하여 월 80만원 한도의 교육훈련비, 선도농가에는 월 40만원 한도의 교수수당을 지급
- 교수수당
 - 지원금액: 연수생 1인당 월 40만원 한도(3~7개월) 지급
 - ※ 교수수당은 연수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며 연수생이 2명일 경우 2배 지급
 - 지원조건: 선도농가는 연수생에게 현장실습품목에 대한 실습포장과 그에 따른 재료 제공하여야 함 ※ 실습포장에서 나온 결과물은 선도농가의 소유물로 함
 - 신청방법: 선도농가는 교육훈련 후 매월 단위로 연수 추진실적(결과) 보고서(붙임 12 서식), 입금 받을 통장사본을 첨부한 교수수당 청구서(붙임 9 서식)를 농업기술센터에 제출함
 - ※ 최초 신청시 및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연수약정서 제출
 - ※ 연수 추진실적(결과)보고서는 월별 현장실습보고서 시스템으로 대체 가능
 - 지급시기 및 방법: 월별 현장실습 보고서 시스템 확인 및 제출서류 확인 후 교수수당을 선도농가 은행계좌에 입금

【참고서식목록(선도농가용)】

(붙임 1) 선도농가 선정기준(안)

(붙임 2)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장 지정신청서

(붙임 3)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장 운영계획서

(붙임 4) 선도농가 학습지원 계획서(시스템 입력)

(붙임 5) 현장실습보고서(시스템 입력)

(붙임 6) 보안서약서

(붙임 7)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붙임 8)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장 지정 현황

(붙임 9)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장 연수 (표준)약정서

(붙임 10)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장 추진상황(결과) 점검보고서

(붙임 11) 선도농가 교수수당 청구서

(붙임 12)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장 연수 추진실적(결과) 보고서

[붙임 1]

선도농가 선정기준(안)

평가항목	배점	득점	비고
<p>○ 연수시행 기반 및 수행능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일 또는 유사사업 수행경험 * 고용부 농산업인턴제, 농식품부 WPL 등 - 농촌진흥사업 시범교육장 및 교육이수실적 - 영농규모 및 관련분야 기술보유 현황 * ICT(정보통신기술) 활용 시설 등 - 실습포장, 교육장 위치 및 효율성, 교재 등 구비여부 	30		
<p>○ 연수계획의 적절성 및 실효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수 계획의 타당성 및 구체성 - 월별 실습내용의 실천 가능성 - 연수후 사후관리 및 기대효과 	40		
<p>○ 기타여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기업, 유관기관 등 연수관련 협력수준 - 작목반, 타 농가와의 협력 및 참여도 - 관련분야 자격증 보유 여부 - 현장실습 코칭 및 지도계획(시스템 활용 등) - 여성농업인 여부 	30		
합 계	100		
종합의견			

[붙임 2]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장 지정신청서

① 신청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
주사업장 주소			
연락처		이메일 주소	
② 연수가능작목	(주작목)	(부작목)	
③ 연수가능지역			
④ 연수가능기간			
⑤ 자기소개	1. 주작목의 영농규모 2. 전체 영농규모 3. 영농경력(년)		
⑥ 현장실습 연수 운영계획 요약			
⑦ 기타 특이사항			
⑧ 추천기관(단체) 확인란	(소속)	(직위)	성명 (인) 적합여부

본인은 2023년도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지침에 의거 '현장실습교육장' 지정을 상기와 같이 신청합니다.

신청일 : 2023년 월 일

신청인 : (인)

별첨 :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장 운영계획서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장 지정신청서 작성요령

- ① 신청자: 농업인은 성명과 생년월일, 농업법인은 명인 명칭과 대표자 성명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
- ② 연수가능작목: 선도농가가 연수를 제공할 수 있는 주작목과 부작목을 기입
- ③ 연수가능지역: 선도농가가 연수를 제공할 수 있는 지역을 구체적으로 기입
- ④ 연수가능기간: 연수희망기간을 최소 1개월 이상으로 하여 개월수로 표기 하되, 연수개시 월부터 종료월을 표기(예시 : 2~12월)
- ⑤ 자기소개: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장 지정 근거로 이용됨으로, 구체적으로 작성하되, 영농규모, 영농경력, 매출액 등을 상세히 기재(필요 시 별지에 작성이 가능)
- ⑥ 현장실습 연수 운영계획 요약: 현장실습교육의 연수과정 및 연수방법 등을 기재하되, 별첨의 운영계획서를 요약하여 기입
- ⑦ 기타 특이사항: 연수에게 특별히 요구하는 내용
- ⑧ 확인란: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연수시행자(선도농가) 후보자를 확인할 때에는 자질과 소양, 영농기술 수준, 연수 관련 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 필요

* 해당 란에 기입할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 첨부 가능

[붙임 3]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장 운영계획서

①신청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②연수가능작목	(주작목) (부작목)
③연수가능기간	
④영농규모 및 기술보유 현황	
⑤교육의 주요내용 및 목표	
⑥월별 실습사항	
⑦실습 기대효과	
⑧추천기관 확인란	(소속) (직위) 성명 (인) 적합여부

본인은 2023년도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장’ 운영계획서를 상기와 같이 제출합니다.

신 청 일 : 2023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장 운영계획서 작성요령

- ① 신청자: 농업인은 성명과 생년월일, 농업법인은 명인 명칭과 대표자 성명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
- ② 연수가능작목: 선도농가가 연수를 제공할 수 있는 주작목과 부작목을 기입
- ③ 연수가능기간: 연수가능기간을 최소 1개월 이상으로 하여 개월수로 표기 하되, 연수개시 월부터 종료월을 표기(예시 : 3월~12월)
- ④ 영농규모 및 기술보유 현황: 연수생이 선도농가를 선택하는 판단 자료로 이용됨으로 구체적으로 작성
- ⑤ 교육의 주요내용 및 목표: 연수생에게 제공하는 연수 내용과 목표를 구체적으로 작성
- ⑥ 월별 실습사항: 연수희망기간 내에 월별로 진행되는 주요 현장실습사항을 기재
- ⑦ 실습 기대효과: 연수희망기간 내에 현장실습 수행시 기대되는 영농 기술 및 경영 능력 향상 등을 기입
- ⑧ 확인란: 농업기술센터소장은 객관적인 자료에 입각하여 선도농가 후보자의 운영계획서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시 선도농가 후보자와 협의·보완 등 조치 필요

* 해당 란에 기입할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 첨부 가능

[붙임 4]

선도농가 학습지원 계획서(시스템 입력)

구 분	주 요 내 용							기타 사항
개 요	시·군·명	선도농가		연수생 성명 (예상)	연수희망기간		연수 지원 작목	
		성명	영농연월		시작일	종료일		
핵심 생산기술								
경영·유통 및 창업								
농촌적응 노하우								
견학·지인 소개								
기대효과								

[붙임 5]

현장실습 보고서(시스템 입력)

○ 사업개요

구분	이름	작목	계약기간	월 근무일수	규모(m ³)
귀농연수생					
선도농업인					

○ 경영계획, 실천, 점검(To Do List)

* 연수생 작성

번호	경영계획	경영실천(창업접목)
1		
2		
3		
4		
5		

○ 향후 계획 및 시사점

선도농업인	연수생

○ 농업경영 코칭

* 센터 담당자 작성

	담당자 확인 (서명)
2023년 월 일	

[붙임 6]

보안서약서

본인은 농촌진흥청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현장실습 중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은 협약기간 중은 물론, 협약만료 후에도 외부에 일체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2. 농촌진흥청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운영지침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담당공무원의 운영지침 상 지시에 따르겠습니다.
3. 농촌진흥기관의 명예와 신용을 손상하거나, 업무 관련 자료를 유출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4. 현장실습교육 중 특별한 문제점이 발생될 시에는 즉시 현장실습 담당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와 같이 성실한 자세로 현장실습교육에 임할 것이며, 본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3년 월 일

서약자 : (인)

○○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

[붙임 7]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상기 본인은 농촌진흥청의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에 대한 관리 등을 위한 개인정보 이용에 동의합니다.

2023년 월 일

성명 (인)

○○ 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장 연수 (표준)약정서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시행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에 의거 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소장을 “갑”이라 하고, 선도농가 ()를 “을”이라 하며, 연수생 ()을 “병”이라 하며, “갑”·“을”·“병”은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1. 약정기간: 2023년 월 일부터 2023년 월 일까지(개월)

2. 약정내용

제1조(총칙) “을”은 “병”에 대하여 현장실습교육장 운영계획서 상의 내용을 성실히 연수 및 교육 등을 제공하며, “병”은 “을”의 운영계획서에 따라 성실히 연수 및 교육 등을 이수한다.

제2조(약정의 해약) ①“갑”은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본 약정을 해약 또는 무효화할 수 있다.

1. “을”이 허위 사실로 약정을 체결한 경우는 약정을 무효화할 수 있다.
2. 사업의 착수가 늦거나 사실상 정지상태가 되어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약정을 해약할 수 있다.
3. 기타 중요한 사유로 인하여 본 사업의 계속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약정이 무효화 되었을 경우 “갑”은 “을”과 “병”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약정이 해약되었을 경우에는 해약의 귀책사유에 따라 “갑”은 “을”과 “병”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제3조(연수생과 선도농가) ①“병”은 당초 “을”이 제시한 운영계획서상의 내용과 현저히 연수내용 등이 다를 경우에는 지침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갑”의 중재를 거쳐 약정해지 또는 약정 변경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을”은 “병”이 당초 “을”이 제시한 운영계획서상의 연수 내용 등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침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갑”의 중재를 거쳐 약정해지 또는 약정 변경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을”과 “병”간에 연수과정 중에 발생하는 분쟁 및 이견 등에 대해 “갑”은 중재를 제공할 수 있으나 “을”과 “병”의 민사적인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을”은 현장실습교육 실시에 필요한 사고예방교육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병”은 “을”의 지시에 따라 현장실습교육에 임하여야 한다.

⑤“병”은 현장실습교육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농업인)안전공제 등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을”은 “병”에게 발생할 수 있는 인적, 물적 손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기타 사항은 “을”과 “병”의 민사적인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지침 및 약정의 준수) ①“을”은 지침에서 정하는 사항과 본 약정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시 보조금의 중단 및 회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②“병”은 지침에서 정하는 사항과 본 약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시 연수대상에서 제외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제5조(지침의 적용) 지침의 제 조항은 이 약정서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한다.

제6조(해석) 이 약정서 내용의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 또는 이 약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갑”의 결정에 따르기로 한다.

제7조(특약) 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농촌진흥청의 지침과 본 약정 제1조내지 제6조에 서 정한 내용의 범위내에서 “갑”, “을”과 “병”간에 다음과 같이 특약사항을 정하여 운영한다.

※ 특약사항 :

위 약정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약정서 3부를 작성하고 “을”, “병”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고 “갑”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 “갑”, “을”, “병”이 각 1부씩 보관한다.

2023년 월 일

“갑” 농업기술센터소장 : 인 또는 서명

“을” 성명 : 인 또는 서명

“병” 성명 : 인 또는 서명

<붙임> :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장 운영계획서 1부.

[붙임 10]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장 추진상황(결과) 점검 보고서

①선도농가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②연수생	(성명) (생년월일)
③연수작목	(주작목) (부작목)
총 연수기간	
④보고연수기간	
⑤ 교육의 주요 내용	
⑥기타 특이사항	
⑦종합검토의견	

2023년도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시행지침에 의거 상기와 같이 추진상황 점검 결과를 보고합니다.

2023년 월 일

점검자 : 소속 직위 성명 (인)

○○○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장 추진상황(결과) 점검 보고서 작성요령

- ① 선도농가: 개인의 경우는 성명과 생년월일, 농업법인은 법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
 - ② 연수생: 연수생에 따라 각각 별도의 보고서를 작성함
 - ③ 연수작목: 연수를 제공할 수 있는 주작목과 부작목을 기입
 - ④ 보고연수기간: 추진상황 보고 내용에 해당되는 연수기간을 기입(결과
보고서에서는 전체연수기간과 동일)
 - ⑤ 교육의 주요 내용: 당초 계획에 따라 추진한 교육 내용을 기입
 - ⑥ 기타 특이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입
- * 추진상황 점검시 귀농연수생이 없을시 부재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외출계, 출근부 등)
- ⑦ 종합검토의견: 점검결과 및 그에 따른 조치한(할) 사항을 기입

[붙임 11]

()월 선도농가 교수수당 청구서

사업장명		대표자	
------	--	-----	--

사업자 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	--

소재지		연락처	() -
-----	--	-----	-------

지급희망 은행계좌	계좌번호 : (은행 지점) (예금주 :)
--------------	-----------------------------

교수수당 신청 대상 기간	. . . ~		교수수당 신청금액		(₩) 원
연수생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체연수기간	근무일수	근무시간	청구금액
					원
					원
					원
					원

위와 같이 연수생에 대한 현장실습교육 연수시행에 따른 교수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2023년 월 일
선도농가 (서명 또는 인)
○○○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

- 【구비서류】
1. 연수약정서 1부 사본(기 제출시 생략)
 2. 연수 추진실적(결과)보고서(연수생별 작성)
* 시스템 보고서로 대체 가능
 3. 통장 사본

[붙임 12]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장 연수 추진실적(결과) 보고서

①선도농가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②연수생	(성명) (생년월일)
③연수작목	(주작목) (부작목)
전체연수기간	
④보고연수기간	
⑤교육의 주요 내용	
⑥기타 특이사항	

2023년도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시행지침에 의거 상기 추진실적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 선도농가는 매월 추진실적 보고, 사업종료 시에는 결과 보고서로 제출
(단, 시스템 보고자는 생략 가능)

2023년 월 일

보고자(선도농가) : (인)

○○○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장 추진실적(결과) 보고서 작성요령

- ① 선도농가: 개인의 경우는 성명과 생년월일, 농업법인은 법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
- ② 연수생: 연수생이 2인일 경우 각각 별도의 보고서를 작성
- ③ 연수작목: 연수를 제공할 수 있는 주작목과 부작목을 기입
- ④ 보고연수기간: 추진상황 보고 내용에 해당되는 연수기간을 기입
(결과보고서에서는 전체연수기간과 동일)
- ⑤ 교육의 주요 내용: 당초 계획에 따라 추진한 교육 내용을 기입
- ⑥ 기타 특이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입